



DATA ECONOMY

Global News Trends
in China & Japan

Vol.4. No.9.

2023. 09.

일러두기

- ◆ 해당 자료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발간한 “DATA ECONOMY: Global News Trends” 보고서입니다.
- ◆ 급변하는 데이터 산업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속보성 및 시사성이 높은 해외 데이터 산업 관련 뉴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 ◆ 주요 국가별 데이터 산업 뉴스 및 전문지를 일정기간 모니터링한 후, 월별로 주제국 2개 국가의 핵심 정책 이슈와 이달의 비즈니스 이슈를 선정 후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 정책(Policy): 글로벌 데이터 산업 육성 및 규제 정책 동향
 - 비즈니스(Business): 글로벌 데이터 비즈니스 이슈 및 관련 외신 및 기업 사례 분석
- ◆ 본 보고서는 중국과 일본에서 2023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발생한 데이터 산업의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한 뉴스 정보를 다뤘습니다.
- ◆ 본 자료는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data.or.kr>)를 통해 발간되며, 매월 다른 권역에서 발생하는 최신 데이터 산업 정보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 ◆ 본 자료에 대한 추가 문의 및 제안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와 같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산업기반본부 산업기획팀
 - 기획 및 편집: 하진희 팀장, 안선빈 주임
 - 전화번호: 02-3708-5364
 - 이 메 일: dataissue@kdata.or.kr

Data Economy (China & Japan) HEADLINE

POLICY

2023.06.

중국, 개인정보 국외이전 표준계약 방법
최종 공표, 6월 1일부터 시행

2023.08.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
생성형 AI에 대한 잠정 방법 발효

2023.06.

중국 광저우시, 데이터 서비스 시범구 건설 추진 등
공공 데이터 혁신

2023.06.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성형 AI에 사용되는 데이터 관련 조치 시행

BUSINESS

- 이달의 비즈니스 이슈 -

“빅데이터, 중국 디지털 경제 발전의 주요 동력”

2023.04. 중국 빅데이터 분석 시장 2026년까지 두 배 성장 전망

2023.05. 중국 최초의 빅데이터 거래소,
2025년까지 매출액 100억 위안 목표

부록
참고 자료

중국, 개인정보 국외이전 표준계약 방법 최종 공표, 6월 1일부터 시행 ('23.06)

01. 배경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 中华人民共和国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은 2023년 2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표준계약 방법(个人信息出境标准合同办法)」을 공표하였으며,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표준계약 조치」는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제 38조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3가지 방식 중, 중국 국내 제공자와 국외 수령자 간에 '표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 2023년 6월 1일 이후 중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이 개인정보의 중국 역외 이전할 시에는 표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역외수령자(본사 또는 계열사)와 본 규정에 따라 표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규정 시행 이전에 국외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규정에 따라 새로운 표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02. 개인정보 국외이전 경로 선택

대량의 중요한 데이터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에서는 '보안 평가 경로'만 선택할 수 있다. 이 경로는 일반적으로 기업 내 개인정보가 국외로 빈번하게 이동하는 상황에 적합하며, 기업이 아직 표준 계약 조건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률 문서에 서명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표준 계약 경로는 소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에 적합하며, 외부 기관의 개입이나 사전 승인 또는 인증 없이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표준 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운영이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은 표준 계약이 해외 수신자에 대해 보다 엄격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표 1 중국의 데이터 이전경로 요약

	내용	보안 평가 경로	개인정보 보호 인증 경로	표준 계약 경로
1	발급 기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국가정보보안표준화 기술위원회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2	유효성 수준	규범적 법률 문서	국가 표준	규범적 법률 문서
3	발효 시기	2022.09.01 발효 + 6개월 수정 기간	2022.12.16 발효	2023.06.01 발효 + 6개월 수정 기간
4	적용 대상	개인정보 + 중요 데이터	개인정보	개인정보
5	적용 조건	(1) 신용이 우수한 데이터 및 개인정보 처리자 (2)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중요 정보 인프라 운영자 및 데이터 처리자가 개인정보 역외 이전 시 (3) 전년도 1월 1일부터 10만 명의 개인정보 또는 1만 명의 민감 정보를 역외 이전 시	다국적 기업은 국내 자회사나 계열사를 통해 인증 신청할 수 있으며, 해외 개인정보 처리자는 국내에 설립된 전문기관이나 지정대리인을 통해 인증 신청 가능	(1) 핵심정보 인프라시설 운영자가 아닐 것 (2)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100만 명 미만일 것 (3) 전년도 1월 1일 이후 역외로 제공한 개인정보가 10만 명 미만이며, 민감개인정보가 1만 명 미만일 것
6	필요 서류	(1) 신고서 (2) 데이터 유출 위험 자체 평가 보고서 (3) 정보처리자와 역외 수령인 사이에 체결된 법적 문서	(1)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PIA) 보고서 (2)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적 문서	(1)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PIA) 보고서 (2) 표준계약서
7	유효 기간	2년	3년	계약에 따라

3. 개인정보보호 영향 평가의 실시(제5조)

중국 역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역외에 제공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영향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 1) 개인정보처리자 및 역외 수령자의 개인정보 처리 목적, 범위 및 방법의 적법성, 정당성, 필요성
- 2) 역외 이전 개인정보의 규모, 범위, 유형 및 민감도와 개인정보이전이 개인정보 권리에 미치는 위험
- 3) 역외 수령자가 약속한 의무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 및 능력이 역외제공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
- 4) 개인정보 역외 이전 후 변조, 훼손, 유출, 분실, 불법 이용될 위험과 개인정보의 권익 보호 채널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5) 역외 수령자의 소재 국가 또는 지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규정이 표준 계약의 이행에 미치는 영향

- 6) 역외로 반출되는 개인정보의 보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사항

04. 개인정보보호 영향 평가 신고의무(제8조)

개인정보처리자는 표준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다음 중 하나의 경우가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 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고, 표준계약을 “보완” 또는 재계약하며, 이에 따른 제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1) 개인정보를 역외에 제공하는 목적, 범위, 범주, 민감도, 방법 및 저장 위치, 역외 수령자의 개인정보 처리 목적 및 방법이 변경되거나, 개인정보의 해외 보유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 2) 역외수령자가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규정의 변경이 개인정보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3) 기타 개인정보 권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표 2 표준계약의 주요내용

항목	내용
제1조 (정의)	• 개인정보처리자, 역외 수령자, 개인정보주체, 개인정보, 민감개인정보, 감독관리기관, 관련 법규정 등에 대해 정의
제2조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 개인정보 역외제공에 있어서 개인정보주체에 대해 수령자의 명칭(성명), 연락처, 처리목적/방식, 민감정보제공 필요성 관련 고지의무 등의 의무를 규정
제3조 (역외 수령자의 의무)	• 약정된 개인정보 처리목적, 처리방식 및 처리대상 정보유형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등 의무를 규정
제4조 (역외 수령자 소재지의 개인정보보호정책과 법규가 계약이행에 미치는 영향)	• 당사자들이 계약체결 시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 역외 수령자가 계약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역외 현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법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보증 등에 대해 규정
제5조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 개인정보주체는 정보처리에 대해 알 권리, 결정권, 거부하는 권리,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권, 복제권, 정정권리, 보완권리 및 삭제권리 등을 보유한다는 등의 내용을 규정
제6조 (구제)	• 역외 수령자가 연락 담당자를 지정하여 개인정보 처리 관련 문의 또는 신고를 답변하도록 수권하고, 개인정보주체가 제기한 문의 또는 신고를 적시 처리하도록 하며 연락 담당자정보를 개인정보 처리자, 개인정보 주체에게 고지하는 등 구제방법 규제
제7조 (계약해지)	• 개인정보처리자가 역외 수령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할 수 있는 사유 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해 규정
제8조 (계약위반책임)	• 당사자들은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 또는 개인정보주체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등 계약위반책임에 대해 규정
제9조 (기타)	• 계약조항 우선효력, 준거법, 통지, 분쟁해결, 계약의 해석 등에 대해 규정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잠정 방법 발효 (23.08)

01. 배경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2023년 8월 15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과학기술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인공지능(AI) 기술기업 대상의 생성형 AI 서비스 규제안인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잠정방법(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을 발효하였다.

해당 조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데이터 처리 활동의 표준화된 적용을 촉진하여 국가 안보와 사회 공익을 보호하고자 제정되었다.

본 규정의 24개 지침은 생성형 AI 서비스 플랫폼 출시 전 등록 및 보안 검토 진행, 인위적으로 제작된 콘텐츠에 대해 라벨링 의무화, 모든 데이터와 기반 모델이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도록 하며 적절한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합법적인 소스(legitimate sources)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의 조치를 공식화한다.

02. 적용 범위 및 대상(제2조)

조치의 적용 범위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중국 영토 내에서 텍스트, 사진, 오디오, 비디오 등의 서비스를 대중에게 제공하기 위해 생성형 AI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국가가 뉴스, 출판, 영화, TV 제작, 문학 및 예술 창작과 같은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산업 단체, 기업, 교육 및 과학 연구기관, 공공문화기관 등이 생성형 AI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따르게 된다. 다만, 생성형 AI 기술을 개발·적용하지만,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자국민에게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 조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03. 콘텐츠 관리(제4조) 관련 지침

생성형 AI 서비스는 법률 및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사회 도덕과 윤리를 존중하며 다음 조항을 준수해야 함

- (1) 사회주의 핵심가치를 준수하고 국가 권력 전복, 사회주의 체제 전복, 국가 안전과 이익 위협, 국가 이미지 훼손, 국가 탈퇴 선동, 국가 통일과 사회 안정 훼손, 테러 및 극단주의 전파, 국가 중요 및 민족차별, 폭력, 음란 및 허위정보 등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금지하는 콘텐츠를 생성해서는 안 됨
- (2) 알고리즘 설계, 학습 데이터 선택, 모델 생성 및 최적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인종·신앙·국가·지역·성별·연령·직업·건강 등으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3) 지적 재산권과 기업 윤리를 존중하고 상업적 비밀을 유지하며, 알고리즘, 데이터, 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독점 및 불공정 경쟁을 해서는 안 됨
- (4)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존중하고, 타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초상권·명성·명예·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침해해서는 안 됨
- (5) 서비스 유형의 특성에 따라 생성형 AI 서비스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생성된 콘텐츠의 정확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04. 주요 기술 개발과 거버넌스(제7,8조) 관련 지침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는 법에 따라 사전 학습, 최적화 학습 등 기타 학습 데이터 처리 활동을 수행하며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함

- (1) 합법적인 출처의 데이터 및 기본 모델을 사용해야 함
- (2) 타인이 누리는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됨

- (3) 개인정보가수반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거나 기타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규정을 충족해야 함
- (4) 학습 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하고 학습 데이터의 신뢰성, 정확성, 객관성 및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 (5) ‘사이버보안법’, ‘데이터 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 및 행정 규정의 관련 조항과 관할 당국의 감독 요건을 준수해야 함

생성형 AI 연구 개발 과정에서 데이터 라벨링이 수행되는 경우, 제공자는 본 조치의 요구사항에 따라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운영 가능한 라벨링 규칙을 수립하고, ▲데이터 라벨링의 품질 평가를 수행하며, ▲라벨링 된 콘텐츠의 정확성 기반으로 검증해야 함. 또한, ▲라벨링 담당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 준법 의식을 제고하고, ▲라벨링 담당자가 표준화된 방식으로 라벨링을 수행하도록 감독 및 지도해야 함

05. 개인정보보호(제1조) 관련 지침

사업자는 법령에 따라 사용자의 입력 정보 및 이용 기록을 보호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아야 함. 또한,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입력 정보 및 이용 기록을 불법적으로 보유하지 않아야 하고 타인에게 불법적으로 제공해서도 안 됨

사업자는 법령에 따라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복사, 정정, 보완 또는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수락하고 처리해야 함

06. 감독 지침 및 위반 시 조치사항(제4-21조)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 콘텐츠를 발견한 경우 즉시 생성 중지, 전송 중지, 내용 삭제 등의 폐기 조치를 적시에 취하고, 모델 최적화 및 교육 등으로 시정하며 관련 주무 기관에 보고해야 함.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의 불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률에 따라 경고, 기능 제한, 서비스 중단 또는 종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며 해당 사안을 관련 기관(당국)에 보고해야 함

관할 당국의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의무 이행 시, 서비스 제공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학습 데이터의 출처, 규모, 유형, 라벨링 규칙, 알고리즘 메커니즘 등을 설명하고 필요한 기술, 데이터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해야 함

생성형 AI 서비스가 법률, 행정법규 및 본 조치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중국 당국은 관련 기관에 통지하여 기술 조치 및 기타 필요 조치를 취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음

서비스 제공자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주무 기관은 ‘인터넷 보안법’, ‘데이터 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과학기술진보법’ 등의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처벌해야 함. 법률 및 행정법규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주무 기관은 직책에 따라 경고 통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주무 기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거나 관련 상황이 심각한 경우 해당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음

중국 광저우시, 데이터 서비스 시범구 건설 추진 등 공공 데이터 혁신 (23.06)

1. 개요

2023년 6월, 중국 광저우시 데이터 서비스 관리국은 데이터 서비스 시범구 건설 추진 등 공공 데이터 혁신 계획을 발표했으며, 7월 「광저우시 데이터 규정(초안)」을 발표하며 규정에 대한 여론 수렴을 진행했다.(~8월)

해당 규정은 데이터 권리 보호, 데이터 유통 적용, 데이터 보안, 감독 등과 같은 데이터 관리 활동에 대한 절차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시에 광저우의 공공 데이터 운영 메커니즘을 혁신하며, 데이터 요소시장을 구축하고, 데이터의 안전한 유통과 거래를 표준화하여 데이터 서비스 시범구의 건설을 촉진하고자 한다.

02. 주요 내용

1. 광저우 공공데이터 운영 메커니즘 혁신

본 규정은 포괄적인 내용을 다룬다. 우선 중국 최초로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대한 통계 회계 시스템에 데이터 요소를 포함시키는 것을 장려한다’고 언급한다.

또한 개인 데이터 보호 측면에서 ‘개인은 정부 서비스 핫라인 및 기타 채널을 통해 과도한 개인 정보가 수집되는 것에 대해 데이터 관할 당국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신고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동시에 데이터 업무에 대한 정부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며,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사회 개발에 명시적으로 통합하여 최고 데이터 책임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공공 데이터 측면에서, 규정은 공공 데이터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능 데이터 목록을 편집하고, 도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평가 메커니즘 및 기타 조치를 개선함으로써 공공 데이터 관리를 표준화하고 공공 데이터의 공유, 개방성 및 활용을 촉진한다.

2. 혁신적인 공공데이터 허가 운영 모델

본 규정은 광저우의 데이터 요소 시장 할당 개혁에서 불건전한 데이터 순환 메커니즘과 데이터 가치 실현의 어려움에 대응하여 데이터 거래 장소, 데이터 중개인 및 산업 데이터 공간을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 요소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와 실물 경제의 심층 통합을 촉진하며, 데이터 응용 프로젝트 및 시나리오의 강화를 장려하여 데이터 배당을 완전히 제거할 것을 제안한다.

데이터 브로커 및 기타 시장 참여자가 데이터 및 기술 우위를 활용하여 산업 및 시장 데이터를 통합하고 전기, 전자상거래, 금융, 건강, 제조 등과 같은 주요 산업에서 산업 데이터 공간을 구축하여 데이터 공간의 상호 연결을 실현하도록 장려한다. 기업은 데이터 자원을 재무제표에 통합하고, 관련 회계 처리를 표준화하며, 회계 정보 공개를 강화하도록 권장한다.

3. 데이터 서비스 시범구 건설 촉진

본 규정은 데이터 서비스 시범구인 광저우시 난사구(區)의 건설을 촉진한다. 또한 난사구의 데이터 인프라 개선, 데이터 요소 시장 육성 가속화, 홍콩-마카오와의 데이터 교류 및 협력 강화, 웨강아오(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Great Bay Area)의 효율적이고 질서있는 데이터 흐름 촉진을 명시한다. 이에 따라 난사구는 연산 능력, 데이터 알고리즘, 데이터 처리 등 핵심 데이터 기반 산업을 확장하고, 데이터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광저우시는 국경 간 데이터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보안 관리 시스템 하에서 보안 관리를 위한 시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국제 인터넷 액세스를 위한 그린 채널 구축, 국경 간 데이터 감독 모델 구축, ‘국경 간 데이터 순환 화이트리스트 시스템’ 탐색 등을 지원한다.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성형 AI에 사용되는 데이터 관련 조치 시행 ('23.06)

1)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PPC), 생성형 AI 서비스 사용에 관한 지침 게시 ('23.06)

01. 배경

2023년 6월,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PPC)가 생성형 AI 서비스 사용에 관한 지침을 게시했다. 일본은 신뢰할 수 있는 AI라는 공통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포괄적 AI 거버넌스 및 상호 운용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생성형 AI의 기회와 과제에 대한 평가 필요성이 증가되고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에 의한 개인의 권익 확보와 신기술을 기반한 사회 경제적 이익 증진이 기대되는 가운데, 이번 지침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 행정 기관, 일반 이용자가 AI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주의사항을 규정한다.

02. 주요 내용

1.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 및 행정기관에 대한 주의사항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 및 행정기관이 생성형 AI 서비스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 및 행정기관이 개인의 사전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취급하는 개인정보가 머신러닝에 이용되지 않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2. 일반 이용자에 대한 주의사항

입력된 개인정보 AI 머신 러닝에 활용될 수 있으며, 다른 정보와 통계적으로 연동되어 생성형 AI 서비스에서 출력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생성형 AI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입력할 경우, 이러한 위험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그에 적합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2) 일본 개인정보보호감시단, OpenAI에 데이터 수집 경고 ('23.06)

2023년 6월, 일본개인정보보호감시단은 OpenAI에 데이터 수집 경고를 발령했다. 이 경고는 일본 개인정보보호 감시단이 인식한 우려 사항을 기반으로 하며, 향후 새로운 우려 사항이 인식될 경우 필요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고에서는 개인의 사전동의 없이 ChatGPT 사용자 이외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하며, 아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1. 머신러닝을 위한 정보 수집과 관련한 다음의 4가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수집된 정보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2) 수집된 정보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가능한한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3) 상기 (1)과 (2)의 조치를 취한 후에도 수집된 정보에 여전히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특정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후 학습 데이터셋으로 처리해야 한다.
- (4) 본인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서 특정 사이트 또는 제3자로부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요청 또는 지시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프롬프트에 입력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빅데이터, 중국 디지털 경제 발전의 주요 동력”

중국 빅데이터 및 분석 시장 2026년까지 두 배 이상 성장 전망

01. 시장 현황

2022년 중국의 빅데이터 산업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8% 증가한 1조 5,700억 위안(약 287조 431억 원)을 기록했다. 이로써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중국의 주도적 입지가 크게 증대되었다. 중국공업정보화부 관계자는 다음 단계로 5G와 기가비트 네트워크 건설을 가속화하고 6G R&D를 전면 추진하며 국가통합 빅데이터 센터 허브 노드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빅데이터 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질 것이라 언급했다.

02. 시장 예측

IDC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빅데이터 및 분석 시장은 2022년에 약 170억 달러(약 22조 6,270억 원)를 투자하였으며, 2026년까지 두 배 이상 성장하여 364억 9,000만 달러(약 48조 5,682억 원)에 도달할 전망이다. 중국의 시장점유율은 5년 동안 성장해 2024년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앞지르고, 2026년에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8%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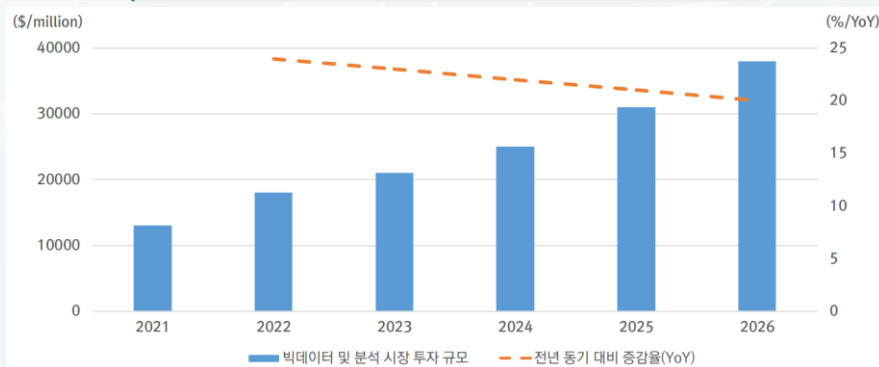
중국의 빅데이터 IT 투자 시장 중 하드웨어 시장에 단기적으로 자금이 계속 유입되어 전체 시장의 약 4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프트웨어 시장은 장기적으로 연평균 성장률 28%에 가까운 강력한 성장을 지속하여 2026년에는 하드웨어 시장을 넘어설 전망이다.

중국의 빅데이터 시장은 다양한 요인에 힘입어 강력하게 성장 중이다. 이 요인에는 디지털 차이나 정책, 데이터 요소, 빅데이터 이니셔티브,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비즈니스 프로젝트 수요, 기술 인프라 개선 등이 포함된다. 벤더들은 특히 금융, 정부, 에너지, 제조 산업 중심으로 기초 컴퓨팅 및 스토리지, 데이터 미들 플랫폼,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또한, Chat GPT의 성공으로 인해 데이터 컴퓨테이션 및 저장 분야에 고객들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빅데이터 시장은 향상된 컴퓨팅 성능과 전문화된 서비스 그리고 더 큰 규모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의 디지털 기반 시설은 광범위한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세계 최대 광섬유 네트워크와 230만 개가 넘는 5G 기지국을 구축하여 디지털 통신 인프라의 강화에 기여하였다. 정부, 금융, 전문 서비스 및 통신 산업은 중국 빅데이터 시장의 주요 사용자로 각 산업의 특성에 맞는 데이터 분석과 관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인터넷 기업들은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빅데이터는 중국의 실물경제 발전을 주도하고, 제조업과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이로써 중국은 전자 상거래와 모바일 결제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기록 중이다.

그림 1 중국 빅데이터 및 분석 시장 총 IT 투자 규모 전망



출처: IDC, China Internet Watch

중국 최초의 빅데이터 거래소, 2025년까지 매출액 100억 위안 목표 ('23.05)

01. 중국 최초의 빅데이터 거래소 거래 규모

빅데이터 산업 중심지인 중국 구이저우(貴州)성, 구이양(貴陽)에 위치한 중국 최초의 빅데이터 거래소가 큰 성장 목표를 발표했다. 당국에 따르면, 거래소는 2025년까지 연간 거래량 100억 위안(약 1조 8,283억 원) 이상을 기록할 목표를 수립했으며 목표 달성 시, 중국 데이터 거래 시장의 주도적인 입지를 점할 것으로 예측된다.

구이양 빅데이터 거래소는 2015년에 설립된 이후 데이터, 컴퓨팅 성능, 알고리즘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 거래를 지원하며, 금융, 운송, 기상학을 비롯한 20가지 이상의 산업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643개의 거래 주체가 이 거래소에서 활동하며, 누적 거래 규모는 약 16억 7,000만 위안(약 3,053억 원)에 달한다.

02. 중국 데이터 거래소 현황

2023년 6월 기준, 중국 정부가 주도 또는 허가한 데이터거래소는 44개이며, 상위 데이터거래소의 거래 규모는 10억 위안에 이르는 등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거래 대상은 주로 데이터 API, 데이터세트, 데이터 보고서이며 신형 데이터 유형을 개발하고 있다. 거래 가능한 데이터 서비스 범위도 기존의 금융 및 인터넷 분야에서 의료, 기상, 교통, 물류, 통신, 교육, 인문, 지리, 생활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빅데이터 거래소는 이처럼 중국 정부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있어

표 3 중국 대표 데이터 거래소 명단 (일부)

구분	데이터 거래소	소재지
1	중관촌 수하이 빅데이터 거래플랫폼	베이징
2	베이징 빅데이터거래 서비스플랫폼	베이징
3	충칭 빅데이터 거래시장	충칭
4	구이양 빅데이터거래소	구이양
5	우한 창장 빅데이터거래센터	후베이
6	우한 동후 빅데이터거래센터	후베이
7	화중 빅데이터거래소	후베이
8	화둥 장쑤 빅데이터거래센터	장쑤
9	허베이 징진지 빅데이터거래센터	허베이
10	하얼빈 데이터거래센터	헤이룽장

출처: 링이 싱크탱크(零壹智库)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경제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구이저우성은 중국에서 빅데이터와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는 빅데이터 허브 지역으로, 올해 초 구이저우성은 빅데이터 분야에 200억 위안(약 3조 6,566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완료하고 200개 이상의 디지털 경제 프로젝트를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 결과, 올해 1분기까지 80억 7천만 위안 이상의 투자를 완료했으며, 대형 데이터센터 10개와 초대형 데이터센터 8개를 설치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역 GDP가 약 6% 성장해 2조 2천억 위안(약 408조 8,040억 원)에 달하며, 디지털 경제는 전체 경제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4 중국 데이터거래소 서비스 유형

	데이터거래소	데이터 서비스	데이터 범위
1	우한 동후 빅데이터거래센터	데이터 맞춤형 제작, API몰, 동후 AI(기상데이터, 거시경제 등 데이터세트)	기상, 차량, 기업, 전자상거래, 여행, 신용평가, 통신, 의료 등 분야 데이터
2	화둥 장쑤 빅데이터거래센터	데이터 솔루션(신분 확인 솔루션, 전자상거래 위험제어 솔루션, 전력 빅데이터 솔루션, 금융산업 솔루션 등)	금융(은행, 보험, 혁신금융), 교통(물류, 자동차, 선박, 철도), 정부(공상, 사법, 공안, 전력, 세무), 소비(부동산, 여행, 소매, 전자상거래, 공유경제)
3	저장 빅데이터거래센터	데이터 안전 아이슬랜드 솔루션(프라이버시 연산 플랫폼), 데이터 담보(지재권)	금융, 스마트도시 등

출처: 링이 싱크탱크(零壹智库)

참고 자료

정책 1 – 중국, 개인정보 국외이전 표준계약 규정 최종 공표, 6월 1일부터 시행

- [个人信息出境标准合同办法](#), 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办公室, 22 Feb, 2023
- [China: A practical insight into China SCCs and their impact on businesses](#), dataguidance, Mar, 2023
- [《个人信息出境标准合同备案指南（第一版）》六大要点解析](#), zhonglun, 1 June, 2023
- [《个人信息出境标准合同办法》二十大症结问题解读](#), AIIBRIGHT, 7 Mar, 2023
- [중국 「개인정보 역외제공 표준계약 규정」 정식 공표, 2023. 6. 1.부터 시행](#), 법률신문, 10 Mar 2023

정책 2 –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 생성형 AI에 대한 잠정 방법 발효

-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办公室, 13 July, 2023
-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China Civil and Commercial Law, 30 July, 2023
- [China's new AI regulations begin to take effect](#), cointelegraph, 15 Aug, 2023
- [Regulatory and legislation: China's Interim Measures for the Management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s officially implemented](#), PWCCN, Aug, 2023

정책 3 – 중국 광저우시, 데이터 서비스 시범구 건설 추진 등 공공 데이터 혁신

- [广州市数据条例公开征求意见](#), 广州市人民政府, 24 July, 2023
- [广州市数据条例公开征求意见 推动南沙（粤港澳）数据服务试验区建设](#), chinanews, 24 July, 2023
- [大胆改革探索，全面赋能发展——对《广州市数据条例（征求意见稿）》的评述与分析](#), column.chinadaily, 27 June, 2023
- [广州市数据条例公开征求意见，探索跨境数据流通白名单制度](#), 南方都市报, 21 July, 2023
- [广州市政务服务数据管理局关于公开征求《广州市数据条例（征求意见稿）》意见的公告](#), 广州市司法局, 21 July, 2023

정책 4. 1) –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PPC), 생성형 AI 서비스 사용에 관한 지침 게시

- [生成AIサービスの利用に関する注意喚起等について](#), 個人情報保護委員会, 2 June, 2023
- [生成 AI サービスの利用に関する注意喚起等](#), 個人情報保護委員会, 2 June, 2023
- [生成AIサービスに関する個人情報保護委員会からの注意喚起と実務への影響](#), ushijina-law, 5 June, 2023
- [個人情報保護委員会, 生成AIサービスの利用に関する注意喚起のパンフレットを公開中](#), internet.watch.impress, 22 Aug, 2023

정책 4. 2) – 일본 개인정보보호감시단, OpenAI에 데이터 수집 경고

- [Japan privacy watchdog warns ChatGPT-maker OpenAI on data collection](#), Reuters, 1 June, 2023
- [生成AIサービスの利用に関する注意喚起等について](#), 個人情報保護委員会, 2 June, 2023
- [OpenAI に対する注意喚起の概要](#), 個人情報保護委員会, 2 June, 2023
- [Breaking! President Tinubu signs Data Protection Bill into law](#), itedgenews, 14 June, 2023

이달의 비즈니스 이슈 – 빅데이터, 중국 디지털 경제 발전의 주요 동력

- [2022年我国大数据产业规模达1.57万亿元](#), CRIONline, 22 Feb, 2023
- [China's Big Data & Analytics Market Set to Double by 2026, Driven by Healthcare, Manufacturing, and Government Sectors](#), chinainternetwatch, 17 Apr, 2023
- [China's first big data exchange aims for 10b yuan turnover by 2025](#), Chinadaily, 3 Aug, 2023
- [중국 내 데이터거래시장 활성화](#), 한국과학기술협력센터, 18 Aug, 2023
- [中国贵阳大数据交易中心为数据增值做出贡献](#), xinhuanet, 28 May, 2023
- [China's Guizhou to Invest \\$2.9 Billion in Big Data Industry](#), w.media, 14 Feb, 2023
- [Xinhua: China's big data hub Guizhou records over RMB 8 billion of investment in the first quarter](#), laoyaoba, 4 May, 2023

DATA ECONOMY

Global News Trends in China & Japan
Vol.4. No.9. 2023.09.

발행일: 2023.9.27

발행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서울시중구 세종대로9길 42, 부영빌딩 7,8,11층)

기획: 산업기반본부 산업기획팀

문의처: 02-3708-5364

본 지에 실린 내용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무단전제를 금하여, 가공 및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